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803

발의연월일: 2022. 6. 2.

발 의 자 : 임오경 · 이상헌 · 정청래

김경만 • 이병훈 • 신동근

박 정・오영환・최기상

김민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발행사업자와 수탁사업자, 발행 사업에 대하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선수·감독·코치·심판 등 경기관계자, 경기단체 및 주최단체의 임직원, 발행사업 종사자 등에 대해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알선, 양도 및 환급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수탁사업자가 구매·환급제한자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경기단체 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로 한정하고 있어 구매·환급 제한 대상인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발행사업자, 기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들이 누락되어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 체육진흥투표권은 국내에 체류 중인 내・외국인 모두 오

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며 환급 시에도 내·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차등이 없이 환급을 진행중에 있음. 체육진흥투표권의 대상경기가 되는 국내 프로리그의 경우, 대부분의 경기단체가 외국인 선수와지도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2021년 말 기준 외국인 선수, 지도자의 수는 142명으로 제한 대상 경기관계자 전체의 2.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외국인 선수나 지도자가 국내 계약 기간 중 발생한 문제가 추후 확인되더라도 해당자의 거주지가 해외인 점, 사실확인을 위한 연락이 어려운 점뿐만 아니라 외국인 제한대상자의 투표권 환급사실이 확인되어 조사 중 당사자가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후속 조사 및법적 조치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구매·환급 제한대상자 전체의 구매행위에 대한 원천적 차단을 위해 수탁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 대상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포함하는 고유식별번호 등의 자료에 대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3항 및 제4항).

법률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를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로, "경기단체 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제2항제3호 및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발행사업자, 경기단체,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본인에게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의 성명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로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 및 구매 제한 등) ①・② (생 및 구매 제한 등) ① • 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제2항 각 호 ③ 수탁사업자는 제2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 하 이 조에서 "환급금 지급 금 게 제27조에 따른 환급금을 내 지 대상자"라 한다)-----.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사업자는 「소득세법」 (4) -----제84조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 상의 환급금을 지급받을 자가 제3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 금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지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경기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 발행사업자, 경기단체, 체육진흥 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제2 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최하는 단체 및 제2항 각 호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에 해당하는 본인에게 환급금 등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의 제 지급 금지 대상자의 성명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출을 요청할 수 있다. 따른 고유식별정보----.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